

【 3 】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0. 7. 26

제출자 양주군수

□ 개정이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관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되어 '99.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수입료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규정에 의하여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 고문변호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 고문변호사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증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단위별로”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용과 수당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송비용 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u>별표의 지급기준</u> 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소송비용 등) ①----- ----- 예산의 범위내에서 <u>별표의 지급기준</u> 에 의하여 각 심급단위별로-----
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200,000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용과 수당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1981. 2. 28 대법원규칙 제758호]

개정 1990. 8. 21 대법원규칙 제112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제 1 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8.2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90.8.21>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가압류, 거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거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90.8.21>

제4조 (소송물가액등의 산정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소송물가액 또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의 산정은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제1항 단서, 제2항,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0.8.21>

②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보수의 감액)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의 경우

2. 소송이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

제6조 (재량감액)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1.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8編 民事法 第3章 民事節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별표)

소송물가액	소송비용에 산입되는비율
100만원까지 부분 $(1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00\text{만원}) \times \frac{9}{100})$	10%
100만원을 초과하여 200만원까지 부분 $(19\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200\text{만원}) \times \frac{8}{100})$	9%
200만원을 초과하여 300만원까지 부분 $(27\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300\text{만원}) \times \frac{7}{100})$	8%
300만원을 초과하여 400만원까지 부분 $(34\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400\text{만원}) \times \frac{6}{100})$	7%
40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까지 부분 $(4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00\text{만원}) \times \frac{5}{100})$	6%
500만원을 초과하여 1,000만원까지 부분 $(65\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000\text{만원}) \times \frac{4}{100})$	5%
1,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45\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3,000\text{만원}) \times \frac{3}{100})$	4%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5\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000\text{만원}) \times \frac{1}{100})$	3%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255\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억원) \times \frac{0.5}{100})$	1%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0.5%

<개정 전>

第19編 内國稅 第3章 間接稅 附加價值稅法

1. 財貨의 移動이 필요한 경우에는 財貨의 移動이 開始되는 場所
2. 財貨의 移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財貨가 供給되는 時期에 財貨가 所在하는 場所
 - ②用役이 供給되는 場所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곳으로 한다.
 1. 用役가 提供되거나 財貨·施設物 또는 權利가 사용되는 場所
 2. 國內外에 걸쳐 用役이 提供되는 國際運送의 경우에 事業者가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인 때에는 旅客이 塔乘하거나 貨物이 積載되는 場所
 - ③第1項과 第2項에 規定하는 供給場所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章 零細率適用과 免稅

第11條 (零稅率適用) ①다음 各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零의 稅率을 적용한다.

1. 輸出하는 財貨
2. 國外에서 提供하는 用役
3. 船舶 또는 航空機의 外國航行用役
4. 第1號 내지 第3號 이외에 外貨를 獲得하는 財貨 또는 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②第1項의 規定은 事業者가 居住者 또는 内國法人인 경우에 한하여 適用한다. 다만, 同項第3號의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事業者가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인 경우에도 그 外國에서 大韓民國의 居住者 또는 内國法人에게 동일한 免稅를 하는 때에는 零의 稅率을 適用한다.
 - ③第1項에 規定하는 財貨와 用役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免稅) ①다음 各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附加價值稅를 免除한다.

1. 加工되지 아니한 食料品(食用에 供하는 農產物·畜產物·水產物과 林產物을 包含한다)과 우리나라에서 生產된 食用에 供하지 아니하는 農產物·畜產物·水產物과 林產物
2. 수돗물
3. 煉炭과 無煉炭
4. 醫療保健用役(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과 血液
5. 教育用役
6. 旅客運送用役. 다만, 航空機·高速버스·專黃버스 또는 택시에 의한 用役은 제외한다.

第19編 内國稅 第3章 間接稅 附加價值稅法

7. 圖書·新聞·雜誌·官報·通信과 放送. 다만, 廣告는 제외한다.
 8. 郵票(蒐集用 郵票를 제외한다)·印紙·證紙·福券과 公衆電話
 9. 專賣品
 10. 金融·保險用役
 11. 不動產賃貸
 12. 土地
 13. 辯護士·公認會計士·稅務士·關稅士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職業上
제공하는 人的用役
 14. 藝術創作品·純粹藝術行事·文化行事와 非職業運動競技
 15. 圖書館·科學館·博物館·美術館·動物園 또는 植物園에의 入場
 16. 宗教·慈善·學術·救護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가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7. 國家·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業務를
代行하는 團體가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18. 國家·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團體에
無償으로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② 다음 各號의 財貨의 輸入에 대하여는 附加價值稅를 免除한다.
1. 加工되지 아니한 食料品(食用에 供하는 農產物·畜產物·水產物과 林產物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圖書·新聞과 雜誌
 3. 學術研究團體·教育機關 또는 文化團體가 科學·教育·文化用으로 輸入하는
財貨
 4. 宗教儀式·慈善·救護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外國으로부터 宗教團體·慈善團
體 또는 救護團體에 寄贈되는 財貨
 5. 外國으로부터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에 寄贈되는 財貨
 6. 居住者에게 寄贈되는 少額物品으로서 寄贈받는 者가 直接 사용할 것으로 인
정되어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
 7. 移徙·移民 또는 相續으로 인하여 輸入하는 財貨
 8. 旅行者携帶品·別送品과 郵送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거나 그 簡易稅率이 適
用되는 財貨
 9. 輸入하는 商品見本과 廣告用物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
 10. 우리나라에서 開催되는 博覽會·展示會·品評會·映畫祭 또는 이와 類似한
行事에 出品하기 위하여 無償으로 輸入하는 物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
 11. 條約·國際法規 또는 國際慣習에 의하여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로서 大統領
令이 정하는 것

<개정부>

第20編 内國稅 第4章 間接稅 附加價值稅法

在하는 場所

- ②用役이 供給되는 場所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곳으로 한다.
1. 役務가 提供되거나 財貨·施設物 또는 權利가 사용되는 場所
 2. 國內外에 걸쳐 用役이 提供되는 國際運送의 경우에 事業者가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인 때에는 旅客이 搭乘하거나 貨物이 積載되는 場所
 - ③第1項과 第2項에 規定하는 供給場所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章 零稅率適用과 免稅

第11條 (零稅率適用) ①다음 各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零의 稅率을 적용한다.

1. 輸出하는 財貨
2. 國外에서 提供하는 用役
3. 船舶 또는 航空機의 外國航行用役
4. 第1號 내지 第3號 이외에 外貨를 獲得하는 財貨 또는 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②第1項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事業者가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인 경우에는 그 外國에서 大韓民國의 居住者 또는 國內法人에게 同一한 免稅를 하는 경우에 限하여 零의 稅率을 適用한다. <改正 77·12·19>
- ③第1項에 規定하는 財貨와 用役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免稅) ①다음 各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附加價值稅를 免除한다. <改正 80·12·13, 88·12·26, 93·12·31, 98·12·28, 99·12·28>

1. 加工되지 아니한 食料品(食用에 供하는 農產物·畜產物·水產物과 林產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生產된 食用에 供하지 아니하는 農產物·畜產物·水產物과 林產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煉炭과 無煙炭
4. 醫療保健用役(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과 血液
5. 教育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6. 旅客運服用役. 다만, 航空機·高速버스·專黃버스·택시·特殊自動車 또는 特種船舶에 의한 旅客運服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圖書·新聞·雜誌·官報·通信 및 放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廣告는 제외한다.

第20編 内國稅 第4章 間接稅 附加價值稅法

8. 郵票(蒐集用 郵票를 제외한다) · 印紙 · 證紙 · 福券과 公衆電話
 9. 담배事業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製造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담배事業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販賣價格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 나. 담배事業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特殊製造用 담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0. 金融 · 保險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1. 住宅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의 貸貸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2. 土 地
 13. 著述家 · 作曲家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職業上 提供하는 人的用役
 14. 藝術創作品 · 藝術行事 · 文化行事와 非職業運動競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5. 圖書館 · 科學館 · 博物館 · 美術館 · 動物園 또는 植物園에의 入場
 16. 宗教 · 慈善 · 學術 · 救護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가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7. 國家 · 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이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18. 國家 · 地方自治團體 · 地方自治團體組合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團體에 無償으로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 ② 다음 各號의 財貨의 輸入에 대하여는 附加價值稅를 免除한다. <改正 80·12·13, 88·12·26, 98·12·28, 2000·1·12>
1. 加工되지 아니한 食料品(食用에 供하는 農產物 · 畜產物 · 水產物과 林產物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圖書 · 新聞 및 雜誌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3. 學術研究團體 · 教育機關 및 韓國教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教育放送公社 또는 文化團體가 科學 · 教育 · 文化用으로 輸入하는 財貨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4. 宗教儀式 · 慈善 · 救護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外國으로부터 宗教團體 · 慈善團體 또는 救護團體에 寄贈되는 財貨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5. 外國으로부터 國家 · 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에 寄贈되는 財貨
 6. 居住者에게 寄贈되는 少額物品으로서 寄贈받는 者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關稅가 免除되는 財貨
 7. 移徙 · 移民 또는 相續으로 인하여 輸入하는 財貨로서 關稅가 免除되거나 關稅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稅率이 적용되는 財貨
 8. 旅行者携帶品 · 別送品과 郵送品으로서 關稅가 免除되거나 그 簡易稅率이 適

第20編 内國稅 第4章 間接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사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12.31>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개정 90.12.31>

②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80.12.31)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80.12.31, 81.6.9, 88.6.9, 90.12.31, 91.12.31, 95.7.20, 95.12.30, 98.12.31 대령15973, 99.12.31>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第20編 内國稅 第4章 間接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라) 음악·제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바) 첨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카) 라디오·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 (나) 및 (다) <삭제>
 - (라)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
 - (마) 상담소·직업소개소·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바)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사) 개·닭·말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

第20編 内國稅 第4章 間接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77·6·29)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 1 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 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93·12·31>

②법 제12조제 1 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개정 99·12·31>

③법 제12조제 1 항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④법 제12조제 1 항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 1 항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88·6·9, 94·12·31, 95·12·30, 98·12·31 대령15973, 99·12·31>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3. 공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4.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전문개정 83·7·1)

제38조 삭제 <98·12·31 대령15973>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문개정	1989. 3. 11
		조례 제1883호

개정 1993. 11. 30 조례 제2424호
 개정 1996. 1. 12 조례 제2621호
 개정 1998. 11. 09. 조례 제2848호
 개정 2000. 4. 20 조례 제29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도지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0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93.11.30, '98.11.9)

②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도정상 필요한 때
4. 다음의 사유로 도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 가. 불법기일 도과
 -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 라. 법률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도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송비용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개정 '93.11.30, '96.1.12, 2000.4.20)

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200,000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6.1.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증 척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00.4.2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변호사의 척수금지급액은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하고, 승소사례금과 기타 소송비용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다.(신설 2000.4.20)

제5조 (중재인에 의한 분쟁해결) ①도 또는 도지사와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중재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은 고문변호사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중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한다.
(조신설 2000.4.20)

제6조 (자문실적부의 비치) 법무담당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0)

부 칙 <1989.3.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고문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사건의 사례금지급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임진행중인 사건 중 이 조례 시행후 승소판결사건의 사례금 및 상금상에 대한 척수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1993.11.30>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12>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임하여 진행중인 사건은 이 조례 시행후 승소판결사건의 승소사례금 및 상금상에 대한 청수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1998.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4.20>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에 진행중인 사건의 청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96.1.12, 2000.4.20)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청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 급 기 준			소송비용청구 구비서류
구 분	사 건 별	청 수 금	
	1. 신청사건	본안사건 청수금의 100분의 50분위내	0 청구서
인	가.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0 65만원이내	0 원전승소는 청수금의 100분의 150
사	2. 본		0 60퍼센트이상 승소할 경우에는 청수금에 승소비율을 공한 금액
소	안		0 화해의 성립·인락 ·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 의 경우에는 청수금의 100분의 50 (다만, 조건부취하는 제외한다)
증	나.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0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0 중재시는 청수금에 경제적이익 비율을 곱한 금액

페이지 3 / 5

	3. 환송심	0 본안사건 학수금 의 100분의 50분 위내	민사소송의 본안사건 과 같다.	민사소송의 만사건과 같
	1.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한다.	민사소송의 본안사건 과 같다.	0 청구서
행 정 안	2. 가. 소송가액을 산 정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 준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	0 청구서 0 소가증명 0 사건확정 영원
소 송	나. 소송가액을 산 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	0 소취해서 해당서류
	3. 환송심	민사소송에 준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	행정소송의 만사건과 같

2. 기타 소송비용

지 금 기 준	구 비 서 류
1. 인지대 : 실제 소요액	0 청구서
2. 송달료 : 실제 소요액	0 인지보증증명서
3. 검증비 : 실제 소요액	0 검증비· 강정료 등 납부 명령서 각 1부
4. 강정료 : 실제 소요액	
5. 증인여비 :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증 3급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2] (신설 2000.4.20)

수임변호사의 학수금지급 조건표

소송물가액	지 금 액	소송물가액	지 금 액

200만원미만	180,000원	3,100만원이상	1,480,000원
200만원이상	190,000원	3,200만원이상	1,510,000원
300만원이상	270,000원	3,300만원이상	1,540,000원
400만원이상	340,000원	3,400만원이상	1,570,000원
500만원이상	400,000원	3,500만원이상	1,600,000원
600만원이상	450,000원	3,600만원이상	1,630,000원
700만원이상	500,000원	3,700만원이상	1,660,000원
800만원이상	550,000원	3,800만원이상	1,690,000원
900만원이상	600,000원	3,900만원이상	1,720,000원
1,000만원이상	650,000원	4,000만원이상	1,750,000원
1,100만원이상	690,000원	4,100만원이상	1,780,000원
1,200만원이상	730,000원	4,200만원이상	1,810,000원
1,300만원이상	770,000원	4,300만원이상	1,840,000원
1,400만원이상	810,000원	4,400만원이상	1,870,000원
1,500만원이상	850,000원	4,500만원이상	1,900,000원
1,600만원이상	890,000원	4,600만원이상	1,930,000원
1,700만원이상	930,000원	4,700만원이상	1,960,000원
1,800만원이상	970,000원	4,800만원이상	1,990,000원
1,900만원이상	1,010,000원	4,900만원이상	2,020,000원
2,000만원이상	1,050,000원	5,000만원이상	2,050,000원
2,100만원이상	1,090,000원	5,100만원이상	2,060,000원
2,200만원이상	1,130,000원	5,200만원이상	2,070,000원
2,300만원이상	1,170,000원	5,300만원이상	2,080,000원
2,400만원이상	1,210,000원	5,400만원이상	2,090,000원
2,500만원이상	1,250,000원	5,500만원이상	2,100,000원
2,600만원이상	1,290,000원	5,600만원이상	2,110,000원
2,700만원이상	1,330,000원	5,700만원이상	2,120,000원
2,800만원이상	1,370,000원	5,800만원이상	2,130,000원
2,900만원이상	1,410,000원	5,900만원이상	2,140,000원
3,000만원이상	1,450,000원	6,000만원이상	2,150,000원

소송물가액	지급액	소송물가액	지급액
6,100만원이상	2,160,000원	8,400만원이상	2,390,000원
6,200만원이상	2,170,000원	8,500만원이상	2,400,000원
6,300만원이상	2,180,000원	8,600만원이상	2,410,000원
6,400만원이상	2,190,000원	8,700만원이상	2,420,000원
6,500만원이상	2,200,000원	8,800만원이상	2,430,000원
6,600만원이상	2,210,000원	8,900만원이상	2,440,000원
6,700만원이상	2,220,000원	9,000만원이상	2,450,000원
6,800만원이상	2,230,000원	9,100만원이상	2,460,000원
6,900만원이상	2,240,000원	9,200만원이상	2,470,000원
7,000만원이상	2,250,000원	9,300만원이상	2,480,000원
7,100만원이상	2,260,000원	9,400만원이상	2,490,000원
7,200만원이상	2,270,000원	9,500만원이상	2,500,000원
7,300만원이상	2,280,000원	9,600만원이상	2,510,000원
7,400만원이상	2,290,000원	9,700만원이상	2,520,000원
7,500만원이상	2,300,000원	9,800만원이상	2,530,000원
7,600만원이상	2,310,000원	9,900만원이상	2,540,000원
7,700만원이상	2,320,000원	1억원이상	2,550,000원
7,800만원이상	2,330,000원	1억5천만원이상	2,800,000원
7,900만원이상	2,340,000원	2억원이상	3,050,000원
8,000만원이상	2,350,000원	2억5천만원이상	3,300,000원
8,100만원이상	2,360,000원	3억원이상	3,550,000원
8,200만원이상	2,370,000원	4억원이상	4,050,000원
8,300만원이상	2,380,000원	5억원이상	4,550,000원

第19編 内國稅 第3章 間接稅 附加價值稅法

- ⑥ 종전에는 課稅特例者 중 1課稅期間 納付稅額이 12萬원(年間 賣出額기준 1千2百萬원)미만인 事業者에 대하여 納付義務를 免除하고 있던 것을 納付稅額이 24萬원(年間 賣出額 기준 2千4百萬원)미만인 事業者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個人事業者の 租稅부담을 덜어주도록 함.
- ⑦ 小賣·飲食業등 최종消費者와 去來하는 業種의 事業者が 販賣代金을 信用卡로 받는 경우에는 信用卡發行金額의 1千分의 5를 納付稅額에서 공제하던 것을 1千分의 10으로 上向調整하여 信用卡로 去來하는 事業者の 租稅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信用卡 사용을 誘導하도록 함.
- ⑧ 小賣·飲食業등 최종消費者와 去來하는 業種의 事業者が 金錢登錄機를 설치하여 金錢登錄機領收證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액의 1千分의 5를 納付稅額에서 공제함으로써 이들 事業者の 課稅資料 陽性化를 도모하였으나, 金錢登錄機의 造作등으로 賣出額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事例가 있기 때문에 金錢登錄機 稅額控除制度의 實益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廢止함.

公布番號	5374	公布日子	1997·8·28	題名	與信專門金融業法
------	------	------	-----------	----	----------

[一部改正]

與信專門金融業法이 制定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整備하려는 것임.

公布番號	5585	公布日子	1998·12·28	題名	附加價值稅法中改正法律
------	------	------	------------	----	-------------

[一部改正]

誠實申告 및 납부를 誘導하기 위하여 簡易課稅者·課稅特例者등 小規模事業者가 稅金計算書를 받는 경우의 稅額控除를 擴大하고, 不誠實納付者에 대한 加算稅率을 調整하는 등 關聯制度를 整備하고, 長期的이고 安定的인 歲入基盤을 構築하기 위하여 담배에 대하여 附加價值稅를 賦課하도록 하는 등, 現行制度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① 製造 담배의 供給 및 輸入을 附加價值稅 免稅對象에서 제외하여 앞으로는 製造 담배를 供給하거나 輸入하는 경우에도 附加價值稅를 내도록 함(法 第12條第1項).
- ② 農護士·公認會計士·稅務士 및 關稅士등이 提供하는 人的用役을 附加價值稅 賦課對象으로 함(法 第12條第1項).
- ③ 현재 直前課稅期間의 供給價額이 7千500萬원미만인 個人事業者에 대하여는 4月과 10月에 附加價值稅額을 申告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대신 稅務署長이 直前課稅期間에 납부한 稅額의 2분의 1을 附加價值稅額으로決定하여 徵收하고 있는 바, 納稅者的 納稅便宜를 增大하고 行政負擔을 縮小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球定告知의 대상을 直前課稅期間의 供給價額이 1億5千萬원미만인 個人事業者로 擴大함(法 第18條第2項).

第19編 内國稅 第3章 間接稅 附加價值稅法

分에 대하여는 稅金計算書등에 기재된 買入稅額의 100分의 30을, 1997年度 供給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25를 각 豊定申告期間 또는 課稅期間에 대한 納付稅額에서 공제한다.

第5條 (少額不徵收에 관한 적용례) 第2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開始하는 課稅期間에 대한 申告분부터 적용한다.

第6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附加價值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限界稅額控除에 관한 經過措置) 第17條의 4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1996年 1月 1일부터 1996年 6月 30일까지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與信專門金融業法〔1997·8·28〕
〔法律第5374號〕

(本文 省略)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④省略

⑤附加價值稅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의 2第1項 本文중 “信用카드業法”을 “與信專門金融業法”으로 한다.

⑥내지 ⑩省略

●附加價值稅法中改正法律〔1998·12·28〕
〔法律第5585號〕

附加價值稅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本文중 “20日내에”를 “20日이내에”로 한다.

第6條第6項중 “사업을 讓渡하는 것”을 “사업을 让渡하는 것(事業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金計算書를 교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第8條 本文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第2號의 物品으로서 船積되지 아니한 物品을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第8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輸出申告가 受理된 物品

第19編 内國稅 第3章 間接稅 附加價值稅法

第12條第1項第9號·第13號 및 第17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담배事業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製造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事業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販賣價格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나. 담배事業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特殊製造用 담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13. 著述家·作曲家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職業上 提供하는 人的用役

17.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이 供給하는 財貨 또는 用役

第12條第2項第7號중 “財貨”를 “財貨로서 關稅가 免除되거나 關稅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稅率이 적용되는 財貨”로 하고, 同項第13號의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項第14號중 “第6號 및 第8號 내지 第13號”를 “第6號 내지 第13號”로 한다.

13의2. 第1項第9號의 規定에 의한 담배

第13條第2項에 第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供給對價의 遲延支給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延滯利子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第17條第2項第5號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第5項중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은”을 “당해 事業者는”으로, “再計算할 수 있다.”를 “再計算하여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課稅期間의 確定申告와 함께 管轄稅務署長에게 이를 申告納付하여야 한다.”로 한다.

다만, 第5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開始후에 登錄한 事業者の 登錄하기 전의 買入稅額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第18條第1項 本文중 “25日(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를 “25日(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이내에”로 하고, 同條第2項 本文중 “7千500萬원”을 “1億5千萬원”으로, “納付稅額”을 “納付稅額(第32條의2第1項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第124條 및 同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하며,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更正 또는 再更正과 國稅基本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修正請求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第19條第1項중 “25日(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를 “25日(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이내에”로 한다.

第20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4項을 第5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第5項(종전의 第4項)중 “第3項”을 “第4項”으로 한다.

③稅金計算書를 교부한 稅關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賣出處別

제2편 기획감사 제1장 기획법무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

[1991. 11. 27]
조례 제1392호]

개정 1991. 12. 31 조례 제1393호

개정 1993. 11. 25 조례 제1463호

개정 1996. 9. 23 조례 제1577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군정상 필요한 때
4. 다음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 가. 불변기일 도파
 -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 라. 법률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 3 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 4 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200,000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사건 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제2편 기획감사 제1장 기획법무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11. 27 조례 제1392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진행중인 사건의 사례금지급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임 진행중인 사건의 이 조례 시행후 승소판결 사건의 사례금 및 상급심에 대한 착수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1991. 12. 31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1. 25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9. 23 조례 제1577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임하여 진행 중인 사건은 이 조례 시행후 승소판결 사건의 승소사례금 및 상급심에 대한 착수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편 기획감사 제1장 기획법무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제4조 제1항 관련)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청구시 구 비 서 류
	내용	착수금	승소사례금	
민사 소송	1. 신청사건	• 본안사건 착수 금의 100분의 50범위내	좌 등	• 청구서
	2. 본안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승소는 착 수금의 100분의 150 • 60% 이상 승소 할 경우 착수금 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사건확정증명원 • 소취하서증 해 당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가액을 산 정할 수 없는 경우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소송물가 액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0,000원 이내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 이 정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해의 성립인 락소취하(쌍방 취하포함) 경우 착수금의 100분 의 50(단, 조건 부 취하는 제외) 	
행정 소송	3.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 금의 100분의 50범위내	상 등	상 등
	1.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함	좌 등	• 청구서
	2. 본안사건		민사소송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사건확정증명원 • 소취하서증 해 당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 는 경우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 는 경우(소송 물가액기준) 			
	3. 환송심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과 동일	상 등

제2편 기회감사 제1장 기회법무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

기 타 소 송 비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대 : 실액 • 송달료 : 실액 • 검증비 : 실액 • 감정료 : 실액 • 출장비 및 여비 : 양주군여비조례중 “5급공무원 해당액” • 기타비용 : 실액(단,검증비, 감정비 소송대리인 수행시 30,000원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서 • 인지보정명령서 • 검증비, 감정료등 납부명령 사본 각 1부.
-------------------	---	---

(추 2)

-128-

제2편 기획감사 제1장 기획법무 양주군고문변호사윤영조례

(별지서식)

사 건 실 적 부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 뢰 연 월 일	의뢰내용	회 신 연 월 일	회시내용	비 고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 개정

□ 개정이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관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되어 '99.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수임료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규정에 의하여 각 심금단위별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연혁 제 12조제1항제13호(개정전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개정후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고문변호사수당 : $200,000\text{원} \times 2\text{명} \times 12\text{개월} = 4,800,000\text{원}$ (기 편성)
- 부가가치세 : $4,800,000 \times 10\% = 480,000\text{원}$ (추가편성 할 금액)

□ 사전예고결과 : 예고예외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전문)
- 법률연혁
- 현행조례(전문)